원무관리론

IX. 산업재해보상보험

학습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판단 근거
- 보험급여의 종류

학습 목표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1. 의의

1) 목적 및 필요성

(1)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

(2)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으로,
근로기준법상 피재근로자에 대한 형사 및 보상책임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담보하는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1. 의의

2) 발전과정

1953.05.10.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사업주의 개별보상책임제 시행

1963.1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공포

1964.06.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공포

1964.07.0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실시(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1981.12.0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7.12.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1. 의의

2) 발전과정

1992.07.01. 산재대상 사업장 확대(5인 이상 사업장의 4일 이상 요양 재해)

1994.12.22. 13차 개정으로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정착

1995.05.01. 근로복지공단 설립, 산재보험 사업의 집행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동 공단에 위탁 및 이관

2000.07.01. 산재대상 사업장 확대(1인 이상 사업장)

2005.01.01.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통합 징수

2010.04.28.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통합

2018.07.01. 산재사업대상확대(공사규모 금액 관계 없이 의무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1. 의의

3) 특성

(1) 보험가입의 강제성

(2) 무과실 책임주의

(3) 정률보상에 의한 신속 공정성

(4) 생활보장급여의 적정보장

(5) 수급권의 보호

(6) 권리 구제

(7) 현실 우선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2. 적용 대상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 해당 하는 사업은 제외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되는 사업

②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되는

③ 가구내 고용활동

④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2. 적용 대상

2) 적용특례대상

① 현장 실습생

②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③ 해외파견자

④ 중소기업사업주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리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리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3) 인정 기준

(1) 업무상 사고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리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3) 인정 기준

(2) 업무상 질병

①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

② 업무상 부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이되어 발생한 질병

④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리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3) 인정 기준

(3) 출퇴근 재해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재해 판단 근거

1) 업무 수행성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행한 것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 중과 같이 여전히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업무 수행성이 인정된다.

2. 업무상 재해 판단 근거

2) 업무 기인성

- 업무와 질병 등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의 행동, 작업내용 및 환경과 당해 재해 간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업무상 재해 판단 근거

3)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의 관계

-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성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은 추정된다.
  업무 수행성이 있으면 업무 기인성은 그 반증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추정되므로,
  업무 수행성은 업무상 재해의 1차적 판단 기준이 된다.
-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는 대부분의 재해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므로
  업무 수행성은 업무 기인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또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적행위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이 부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3. 급여관리

급여관리

1. 보험급여 종류

1) 요양급여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2) 확인 사항

- 업무상의 부상.질병 여부
- 산업적용사업장 여부
- 4일 이상의 요양 재해 여부(4일 미만 시 사업주가 비용처리)

급여관리

1. 보험급여 종류

1) 요양급여

(3) 요양급여의 신청

- 피재근로자가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우,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공단에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결정하기 전까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우선적용하여 받을 수 있다.

급여관리

1. 보험급여 종류

2) 휴업급여

(1)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
대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2)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장기간 요양으로 동종 근로자의 임금이 5% 이상 변동 된 때에는 평균임금을 조정 지급함

(3)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함(이 경우, 사업주가 지급)

(4) 의사 소견에 의해 재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에 의거하여 휴업급여의 청구 가능

급여관리

1. 보험급여 종류

3) 장해급여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을 받았음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

(2) 지급 조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해야 한다.
-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 장해 등급 제 1급 ~ 제 14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 장해보상일시금: 제 4급 ~ 제 14급
  장해보상연금: 제 1급 ~ 제 7급(제 1급 ~ 제 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급여관리

1. 보험급여 종류

3) 장해급여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급여관리

1. 보험급여 종류

4) 간병급여

(1)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료 후 퇴원 이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 받는 사람에게 지급

(2) 간병급여 지급 기준

(단위: 원)

구 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	29,840
가족·기타간병인	41,170	27,450

※ 재요양의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급여관리

1. 보험급여 종류

5) 유족급여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사망 추정의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사망의 추정: 근로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생사가 사고 발생일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

(2)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
- 우선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급여관리

1. 보험급여 종류

6) 상병보상연금

(1)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1. 보험급여 종류

7) 장례비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사망의 추정도 포함)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담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2)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사람에

급여관리

1. 보험급여 종류

1) 직업재활급여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감사합니다